

기술지원협약서

- 사 업 명 : 기록물 분류체계 구축 사업 용역
- 발주기관 : 경기연구원
- 공급사 : 주식회사 아인톱시스템
- 기술지원 : 전자결재시스템 기록물분류기준표 신규 적용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기록물 분류체계 구축 사업 중 수행 과제로서 전자결재 시스템 기록물 분류 기준표 신규 적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공급사는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위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견적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공급사의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, 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₩6,000,000원(부가세 포함)으로 한다.

제4조(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공급사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발주기관명: 경기연구원

공급사명: 주식회사 아인톱시스템



2026년 8월 25일

